

## ■ 최신 법령 ■

## [자본시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채희석 변호사

## 1. 주요 내용

2014년 12월 30일에 공포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자본시장법')을 통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에 관한 의미 있는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하여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에 비하여 위법성의 정도는 낮으나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가 신설되었고, 이러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불공정거래 규제의 사각지대가 해소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존 불공정행위와 비교하여 미공개정보정보이용 및 시세조종 규제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2차·3차 정보수령자의 이용행위, 목적성 없이 시세에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이 시장질서 교란행위로서 금지되었고, 이러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유형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하여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 역시 미공개중요정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1) 제174조 각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sup>1</sup>로부터 나온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정보인 점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轉得)한 자

<sup>1</sup> 기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적용 대상자를 말합니다.

- (2)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sup>2</sup> 를 생산하거나 알게 된 자
- (3) 해킹,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알게 된 자
- (4) 위 (1) 내지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정보인 정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한 자

다음으로 시세조종행위 유형의 불공정행위 역시 처벌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개정 자본시장법이 추가한 시세조종행위 유형의 불공정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호가를 제출한 후 해당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2)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3) 손익이전 또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자기가 매매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짝 후 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4)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는 등으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수요·공급 상황이나 그 가격에 대하여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거나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

근래에 들어 증권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가 점차 늘어나고 그 수법 역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개정 자본시장법으로 그간 문제되었던 사각지대가 상당부분 줄어들어 불공정행위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 다운로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sup>2</sup> 미공개중요정보를 말합니다.